체육단체 및 학교 등 체육지도자 재교육 신청 안내

□ 근거 법령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6(체육지도자의 재교육) ①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.

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2(체육지도자의 재교육) ⑧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.

□ 위 법령에 따라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**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**는 매 2년마다 재교육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등을 받아야 합니다.

※ 근거 법령이 '21년에 마련됨에 따라 **"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"는 '22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.**

□ 이에 따라 해당 **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는 '21.1.14.까지 교육 대상자를 스포츠윤리센터로 통보해야 합니다.**

※ 12.31.에서 1.14.로 제출기한 연장

o 대상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는 해당 종사자를 확인하시어 **아래 양식(붙임 참조)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< 제출 대상기관(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) >

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	
경기단체	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 * '경기인 등록 규정'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된 자 등
	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 단체(축구, 야구, 농구, 배구, 골프)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	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	

o 제출방법 : 전자문서 or 이메일 제출 sports-edu@k-sec.or.kr

o 문의사항 :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 ☎02-6220-1341~4

□ 교육 대상자 및 프로그램

o 교육대상자 :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*

*체육교사, 방과후교사에 상관없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을 모두 포함함.

o 교육주기 : 매 2년마다 이수

o 교육방법 :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사이트 가입 및 교육 이수(온라인 동영상)

o 교육시간 : 총 6시간, '22년 4월~11월 상시 운영(예정)

o 교육내용 : 성폭력 등 폭력 예방, 스포츠인권, 처벌사례 및 피해자지원 등

□ 교육 흐름도

① 대상자 명단 제출	▶	② 회원가입	▶	③ 교육신청 및 이수
▪ 재교육 대상자 소속기관 담당자가 '22년도 교육 대상자 명단 센터로 제출 * 21년 12월 31일 까지		▪ 유형별 회원가입 - 기관 담당자(기관) - 교육대상자(개인) * 개별 회원가입 필수 ('22년 3~4월 예정)		▪ 교육대상자의 개별 교육신청 및 이수 - 교육사이트 오픈 예정(4월) * 이수기간(4월~11월)
④ 교육 만족도조사	▶	⑤ 이수증 발급	▶	⑥ 교육 완료
▪ 교육 만족도조사 - 교육이수 완료 후 실시 * 만족도조사 참여 후 교육이수증 발급 가능		▪ 이수증 발급 - 교육 이수 및 만족도조사 참여 후 발급 가능 * 별도 제출X, 개인 소장O		▪ 교육 완료 - 교육 이수 연도 기준 2년마다* 재교육 이수 * '21년 이수 → '23년 이수

□ 주의사항

o 스포츠윤리센터 외 타 기관 교육이수 인정 불가

o '21년 시행한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지도자 연수과정(3시간),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(1시간)과 별개의 교육으로 '22년 처음 시행되는 교육임 (기존 교육이수 조회 불필요)

o 교육 대상자의 교육 미이수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

o 기관의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이후, 개별 대상자 스포츠윤리센터 회원가입 및 이수 진행 필요 (향후 개별 안내 예정)

o 4월~11월 상시 오픈 과정이며, 이수증 별도 제출처 없음

o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 개수와 상관없이 매 2년마다 1회 교육 이수